



##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

[시행 2023. 10. 18.] [기획재정부고시 제2023-35호, 2023. 10. 18. 제정.]

기획재정부(국제금융과), 044-215-4712

기획재정부(외환제도과), 044-215-4751

기획재정부(외화자금과), 044-215-4736

### 제1장 총칙

**제1-1조(목적)** 이 지침은 「외국환거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이 위임한 바에 따라 영 제7조제8호의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1-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해외외국환업무”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및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외국환업무를 말한다.
2. “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”은 해외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지침 제2-2조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.
3. “동일 그룹”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모회사와 자회사, 관계회사, 본점과 지점 등의 관계로 관련성이 높은 회사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시 인정한 회사들을 의미한다.
4. “대행기관”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본인의 확인의무(법 제10조) 및 보고의무(법 제20조)의 이행을 위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을 확인받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. 이 경우, 대행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.
  - 가.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그룹인 외국환은행
  - 나.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10-20조에 따른 선도은행
  - 다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거나,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시 인정한 기관
5. “은행간시장”은 영 제1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상호간 외국환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.

**제1-3조(업종 및 재무건전성)** 영 제7조제8호에서 “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업종: 외국에서 「은행법」 제8조에 따른 은행업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에 상응하는 금융업(이하 이 지침에서 “금융업”이라 한다)으로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업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  - 가. 외국 금융기관(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다)
  - 나. 외국환은행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
  - 다.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·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
2. 재무건전성: 바젤III 기준, 국제신용등급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충족한다고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할 것

**제1-4조(적용범위)**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법령상 의무, 거래절차 등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은행에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,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외국환거래규정」 등 다른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2장 해외외국환업무를 등록

**제2-1조(신용공여 요건)**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“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”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이 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들 중 선도은행 4개 이상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과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것을 의미한다.

**제2-2조(등록)**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외국에서 금융업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2.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업 인가를 받은 국가의(이하 이 지침에서 “본국”이라 한다)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본국 감독당국의 승인서류
3.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
4.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
5. 사업계획서 등 해외외국환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
6. 영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에 사용할 외국통화 계좌(이하 “업무용외화계좌”라 한다) 및 내국통화 계좌(이하 “업무용원화계좌”라 한다)의 정보
7. 은행간시장 참여기관들과의 신용공여 약정서 사본
8.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무확약서

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서류의 내용, 적합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(이하 “등록요건”이라 한다)을 갖추었는지 및 이 지침 제1-3조에 따른 업종과 재무건전성 요건(이하 “자격요건”이라 한다)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2-3조(변경 및 폐지)** 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영 제16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해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
2.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의무확약서
3. 기타 변경 또는 폐지 사유와 관련된 서류
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등록 및 등록폐지를 해 주어야 한다.

**제2-4조(보완명령)** ① 해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가 등록 이후 사정변경 등으로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할 것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.

**제2-5조(등록취소)**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2-4조 및 제2-6조의 보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
2. 의무확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
3. 등록 이후 은행간시장에서의 1년간 현물환 거래량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준의 거래량에 미달한 경우
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
2.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
3. 위법행위,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처벌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

③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금융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본국에서 금융업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제2-6조(등록 적정성 재검토)** 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등록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전 재검토 시점으로 부터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재검토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.
-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대외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3장 해외외국환업무

**제3-1조(업무범위)** 제1-2조제1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외국환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은행간시장 참여기관이 아닌 자와의 거래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로 업무범위가 한정되며,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통화종류는 원화(KRW)와 미화(USD)로 제한된다.

1.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2조 및 제2-3조에 따른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. 이 경우 “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”은 “외국환은행”으로 본다.
2.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

**제3-2조(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)** 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은행, 한국은행, 외국환평형기금,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·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증권금융회사·보험사업자 및 다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에는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2조 및 제2-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외국환은행, 한국은행, 외국환평형기금,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·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증권금융회사·보험사업자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
③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거래를 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하여야 한다.

**제3-3조(업무용계좌)** 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외화계좌 및 업무용원화계좌를 통해서만 외국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용외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1. 외국환은행,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및 외국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외화자금을 수령하는 경우
  2. 은행간시장 참여기관 또는 고객에게 매각한 원화자금의 대가로 그 은행간시장 참여기관 또는 고객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수령하는 경우
- ③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용외화계좌를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1. 외국환은행, 외국환은행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및 외국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외화자금을 지급하는 경우
  2. 은행간시장 참여기관 또는 고객에게 매입한 원화자금의 대가로 그 은행간시장 참여기관 또는 고객에게 외화자금을 지급하는 경우
- ④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1.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원화자금을 수령하는 경우
  2. 은행간시장 참여기관 또는 고객에게 매각한 외화자금의 대가로 그 은행간시장 참여기관 또는 고객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하는 경우(단, 고객과의 거래의 경우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자금에 한한다.)
- 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용원화계좌를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1.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원화자금을 지급하는 경우
  2. 은행간시장 참여기관 또는 고객에게 매입한 외화자금의 대가로 그 은행간시장 참여기관 또는 고객에게 원화자금을 지급하는 경우(단, 고객과의 거래의 경우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)

**제4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의무**

**제4-1조(확인 의무)** 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1.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여부
  2. 고객의 거래자금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쳐 동일 명의의 외화계좌와 원화계좌 간에 예치·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
  3. 고객의 거래가 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- 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4-2조(보고 의무)** 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2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해외외국환업무 관련 거래내역
    - 가. 거래금액 및 통화종류
    - 나. 거래환율
    - 다. 거래 및 결제일자
    - 라. 거래형태
    - 마. 만기일자
    - 바. 외국환중개회사 경유 여부
  2.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래내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정보
- 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익월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매영업일 기준 선물환매입초과액 및 선물환매각초과액
  2. 매영업일 기준 대항기관과의 원화차입 내역 및 잔액
  3.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보고의무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면제 범위, 보고 주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**제4-3조(자본거래 특례)** 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위해 행하는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「외국환거래규정」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,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「외국환거래규정」상 일반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행한 거래 또는 행위로 본다.

- 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원화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.
1. 대항기관과의 거래
  2.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
- ③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대항기관과 제3-1조에 따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 지침 제3-2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4-4조(대항기관)** 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대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계약서에 위탁범위를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5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**

**제5-1조(총칙)**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성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5-2조(선물환포지션 한도)**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-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선물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 및 외국환은행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선물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(이하 이 장에서 "선물환포지션 한도"라고 한다)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도 적용 기간, 상한 및 하한 등을 제7-1조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.



- ② 외국환은행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를 시행하기로 고시한 영업일부터 한도 준수여부를 매일 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제4-2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선물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선물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.
- ③ 외국환은행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의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5-3조(선물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)** ① 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-2조제2항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: 주의
- 2.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: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선물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
- ② 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.
  - 1.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이상 위반시
  - 2.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
  - 3.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
-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 등을 감면,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- ④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, 시정명령 및 선물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⑤ 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은행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이 조에 따라 제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6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**

**제6-1조(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등)** ①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외외국환취급기관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.

- ②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업무감독, 보고,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**제6-2조(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)** ①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5조제4항가목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검사하는 경우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.

- ②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1. 1회 불이행: 경고 및 시정명령
  - 2. 2회 불이행: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취소 등 제재 건의
- ③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6-3조(관계인에 대한 검사)** ①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5조제4항가목에 따라 관계인을 검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국은행총재가 단독으로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- ② 한국은행총재와 금융감독원장은 관계인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1. 1회 불이행: 경고 및 시정명령
  - 2. 2회 불이행: 불이행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
- ③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장 보칙**

**제7-1조(별도규정)**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및 영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한다.

**부칙** <제2023-00호, 2023. 10. 18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신용공여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)** ① 제2-1조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다만, 기획재정부장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을 요청할 경우 요건 보완기한 설정 등에 대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은 부관 준수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)** 제2-5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제4조(확인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)** 제4-1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